



200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www.kcca.or.kr](http://www.kcca.or.kr)



200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가지정 및 세부품목·물품분류번호의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지정내역 변경공고

1. 이 공고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공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115호(2008. 7. 18)는 이를 폐지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 총 칙

#### 가. 목 적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등 포함)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G2B 분류번호, 8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세부품명
  4.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에 한한다.

②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분류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직접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의 규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II.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26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http://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III.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140개 품목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제품명, 정부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및 산업분류번호는 상세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http://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법률마당 → 공고 → 2009년 공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번호	제품명	물품분류 번호	(세부품명)	산 업 분류번호	비 고
69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24112501	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17210 17222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